

『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소진혁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, 외국인 주민 등을 감면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, 파크골프장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휴관 및 운영 시간 등을 규정하여 파크골프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용인원 제한 신설(안 제4조제5항)
- 사용료 징수 방법 개정(안 제7조제1항)
- 사용료 감면대상 비율 조정(안 제8조제2항)
- 사용료의 반환 조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휴관 및 운영시간 개정 및 신설(안 제18조 제목, 제2항, 제3항)
- 파크골프장 명칭 개정(안 별표 1)
- 파크골프장 이용시설 사용료 및 사용시간 개정(안 별표 2)
- 낙동강 파크골프장 휴관 기준 삭제(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,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8. 25. ~ 08. 30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하여 보훈대상자 등의 감면대상자에 예우를 더하고,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휴관과 운영 시간 규정 및 사용료의 반환 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 개정과 함께, 집행부에서는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임.
- 또한,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일부 동호회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